

##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 계급                  | 직렬 | 직류   | 구분모집 |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
|                     |    |      |      | 도내거주자                  | 해당<br>시·군거주자 | 전국 |
| <b>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b> |    |      |      |                        |              |    |
| 9급                  | 시설 | 일반토목 | 일반   | 도일괄85, 도교육청2           |              |    |
|                     |    |      | 저소득층 | 도일괄2                   |              |    |
|                     |    | 건축   | 일반   | 도일괄21, 도교육청4           |              |    |

#### ※비 고

- 1) 원서접수 시 “계급-직렬(직류)-구분모집-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도일괄, 도교육청)”에서 기관을 선택하여 접수되며 이것을 모집단위라 합니다.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 2) 구분모집, 거주지 등의 응시자격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3) 최종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서 신규임용후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 4) ‘도일괄’이란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를 일괄 선발하고, 임용후보자를 시·군 또는 도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분·추천하는 것으로  
추천받은 기관이 임용예정기관이 되며 관계법규 및 임용예정기관의 인사운영방침 등에 따라 전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5) ‘도교육청’ 모집단위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임용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도교육청 산하기관입니다.

## 2. 시험과목

| 계급                  | 직렬 | 직류   | 시험과목                      |
|---------------------|----|------|---------------------------|
| <b>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b> |    |      |                           |
| 9급                  | 시설 | 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 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비 고

- 1) 출제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입니다.
- 2) 시험시간 : 각 과목별 20분(1문항당 1분)입니다.
- 3) 시험문제는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자체출제하며, 모든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지는 회수되며, 문제 등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배포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3. 시험방법

| 시험명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비 고 |
|--------------|-------------------------|-------|-------|-----|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br>(1·2차 병합실시) |       | 면접시험  |     |

※비 고

- 1)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 3)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시행일 전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 4)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 4. 응시자격

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89조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1) '1. 선발예정인원'의 거주지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
| 도내거주자  | 해당 시·군거주자  | 전국              |
| <p>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p> <p>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p> <p>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p> | <p>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p> <p>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p> <p>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p> | <p>거주지제한 없음</p> |

2) 거주지 제한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인 자입니다.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의 거주경력은 충청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 응시연령

| 구 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 9급  | 18세 이상 | 2001.12.31. 이전 출생자 |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 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 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수급·보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 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구분모집에서도 응시자격이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기 타

1)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접수기간<br>(취소마감일)        | 가산점<br>등록기간     | 구 분  | 시험장소<br>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br>발 표 |
|-----------------|------------------------|-----------------|------|-------------|---------------------|------------|
| 제3회<br>공개경쟁임용시험 | 10.14~10.18<br>(10.21) | 12.21<br>~12.25 | 필기시험 | 11.20       | 12.21               | 2020.1.7   |
|                 |                        |                 | 면접시험 | 2020.1.7    | 2020.1.16.<br>~1.17 | 2020.1.31  |

### ※비 고

- 1)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http://www.chungbuk.go.kr)) 「시험 채용」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2)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지정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등록 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을 포함한 시험장소, 인·적성검사 실시,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5)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1522-0660)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나. 접수시간

**접수시작일 09:00 ~ 접수마감일 18:00**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1) 인터넷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9급 :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2)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3)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 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취소마감일 내에)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기타 응시수수료 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에도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cm×4.5cm 기준
- 2)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모집단위(응시직렬 등)는 변경이 불가하며, 모집단위(응시직렬 등)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취소·접수하는 것으로 가능
- 3)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4) 장애인·임신부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5)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적용시험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나.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8.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가. 적용대상 : 저소득층 구분모집
- 나. 실시방법 : 모집단위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나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분                     |                              | 가산비율<br>(과목별 만점의) | 비고  |
|------------------------|------------------------------|-------------------|---|
| 취업지원대상자<br>(연구·지도사 제외) |                              | 5% 또는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li> <li>·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li> <li>·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 가산점1)</li> <li>·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li> </ul> |
| 의사상자 등                 |                              | 3% 또는 5%          |   |
| 자격증<br>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br>(1개의 자격증만 인정)    | 0.5%~1%           |   |
|                        | 직렬(직류)별 가산점<br>(1개의 자격증만 인정) | 3%~5%             |   |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10%)을 가산합니다.
- 2)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5%)을 가산합니다.
- 2)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
|---------------|------|---|----|----------------------------|------|
| 통신·정보<br>처리분야 | 9급   | 정보관리기술사,<br>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br>정보처리기사,<br>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br>정보보안기사,<br>사무자동화산업기사,<br>정보처리산업기사,<br>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br>정보보안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영기능사,<br>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br>분야    | 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1급),<br>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비 고

- 가)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합니다.
- 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개정법령 등에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 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이 국가 기술자격에서 제외(폐지)됨에 따라 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만 가산 대상자격증에 포함됩니다. ※ 구(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2) 직렬(직류)별 가산점

※ 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제외

가)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참조)

| 구 분  | 9급                 |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2)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가산점 등록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 취업 지원(의사상자 등)여부, 보훈(증서)번호, 가산비율, 자격증명,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3)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필기시험의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4)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10.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종사자(감독관,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시험감독관(시험종사자) 등의 안내에 따라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 중 휴대 적발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바.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는 임용되지 않습니다.)
-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http://www.chungbuk.go.kr)) 「시험채용」란에 게시합니다.
- 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3, 2535~25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